

(참 조)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95-5
번 호	

제출년월일 : 1995. 2.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세무과)

## 1. 제안이유

- '95년도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을 국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수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3. 주요골자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안 제5조)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5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u>인구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 5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u>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p>